

2026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는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자·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의 IR 역량 강화
- 주최/주관 : 김해시,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주)탭엔젤파트너스
- 지원대상 : 김해소재 스타트업 및 이전 예정중인 관외(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 2026년 6월 ~ 12월(6개월)
- 지원내용 :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데모데이 연계 등

멘토링	글로벌 연계	데모데이	투자
·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피드백 등 전문가 멘토링 제공	⊕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 구성 등 기본 교육 · 글로벌 진출 기업별 해외 IR 컨설팅 등	⊕ · Pre IR, G-row UP! 연계 지원	⊕ · Pre IR, G-row UP! 연계 지원

- 선정규모 : 총 10개사 내외
 - 초기 기업 : 5개사 내외(창업 3년 미만 기업)
 - 도약 기업 : 5개사 내외(창업 3년 이상 10년 이내 기업)
- ※ 김해지역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 관내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지사이전 하여함

II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년 6월 ~ 12월(6개월)
- 지원내용 :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데모데이 연계 등

구분	세부내용
전문가 멘토링	· (멘토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1:1 멘토링 제공(5회)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 자문 등 · (IR) 기업진단을 통한 그룹 분류, 단계별 성장전략 및 투자로드맵 수립, IR 피칭 트레이닝 등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글로벌 진출 특화 교육 · 글로벌 진출 기업 대상 해외 IR 컨설팅 및 멘토
데모데이 연계	· Pre IR, G-row UP! 연계 지원
투자	· AC·VC 등 연계하여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우수기업 대상 직접 투자 검토 및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III

신청 및 접수기간

- 모집기간 : 2026. 6. 8.(월) ~ 6. 18.(목) 18:00까지 ※ 시간엄수
- 모집대상
 - 신청자격 : 김해소재 스타트업 및 이전 예정중인 관외(예비)창업자
 - 총 10개사 내외(초기 5개사, 도약 5개사)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⑤ 오리엔테이션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 진행(1.5배수 내외 선정)	·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창업 아이템별 심층 평가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10개사 선정	· 선정기업 10개사 대상 사업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26.6월	~'26.6월	~'26.6월	~'26.6월	'26.7월 중

※ 모집 결과에 따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창업인재양성팀 ☎ 055-310-9270
- (주)탭엔젤파트너스(운용사/접수처) ☎ 032-215-6858

○ 신청서류 및 제출처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구글폼(<https://forms.gle/Lag2UFSv7ZUKhaNX7>) 접수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1일 전에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구분	작성내용	비고
1	참가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2】
3	사업계획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자유양식
5	법인등기부등본	최근일자 기준
6	매출증빙자료**	해당 시
7	본사 이전 또는 지사설립 계획서	【서식4】해당 시

* 반드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매출증빙자료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로 제출(제출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IV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 서류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및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구분	세부내용	점수
김해시 5대 전략산업 및 미래기반산업	- 5대 전략산업 : 의생명·의료기기/ 디지털 물류/ 스마트센서/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 관련 업종 - 미래기반산업 : 액화수소/민군 MRO/ ICT 융합/ 메타버스&콘텐츠/ 식품	1
청년 창업자	- 김해시 청년 기본조례(제2139호)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창업가 우대	1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

○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동기, 사업화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진행

※ 발표자는 기업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임·직원 대리 발표 가능 (위임장 제출)

- 평가시간은 15분 이내(발표 7분, 질의응답 8분)로 운영되며,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진행함

- 심사위원 구성 : 총 3인 이상 구성

- 심사산출 : 위원별 총점 합산 결과, 평균 값으로 순위 부여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팀구성	CEO 및 핵심 인력 우수성	10
2. 시장성	국내외 시장규모 및 성장성	15
	경쟁 현황 및 차별화	15
3. 기술성	개발역량, 독창성, 차별성, 경쟁우위	15
	기술개발 난이도 및 진입장벽	15
4. 사업성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15
	사업화 역량	15
최 종 점 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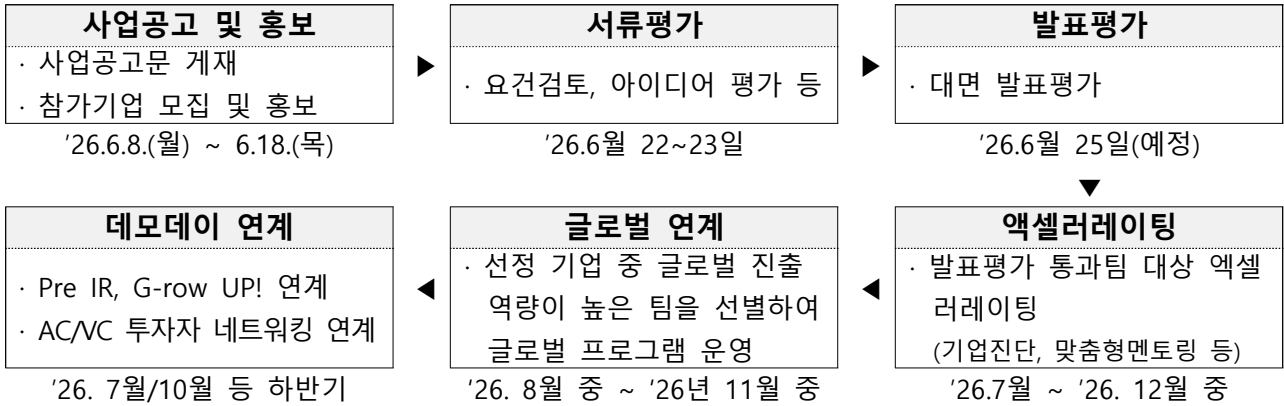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결과

- 1차 서류평가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발표평가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사업 운영일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V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해야 되며,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 심사에 있어서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한하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에서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포기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붙임 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